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

## 조례안

(대표발의: 최은하 의원)

의안 번호	21-136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. 11. .

발의자 : 최은하, 강명숙, 권영숙  
김기석, 김성희, 김영미  
김종선, 김진천, 신종갑  
이민석, 장덕준, 정혜경  
채우진, 한일용

### 1. 제안이유

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, 사회안전망 구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 및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(안 제3조~안 제4조)

다. 지원의 범위(안 제5조)

라.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(안 제6조)

마 교육 및 홍보(안 제7조)

바. 표창(안 제8조)

3. 관계법령: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, 제3조, 제65조의2

4. 입법예고 : 2021. 11. 19. ~ 2021. 11. 24.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: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노동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환경 개선, 사회안전망 구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공동주택”이란 「공동주택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.
2. “입주자등”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,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3. “공동주택 노동자”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 및 미화노동자와 관리사무소 직원을 말한다.
4. “기본시설”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·편의시설(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) 및 냉·난방설비를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

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**제4조(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)** 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,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입주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원의 범위)**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입주자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

2.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
3.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
4.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실태조사 및 시정권고)**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, 기본시설의 설치·이용 현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,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에는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7조(교육 및 홍보)**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8조(표창)**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에게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 
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제5조(지원의 범위)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 제4조의4에 해당

**3. 미첨부 사유**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

**4. 작성자**

작성자 이름	도시환경국 주택과 운동화
연 락 처	02-3153-9305

# 【 관 계 법 령 】

## □ 「공동주택관리법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공동주택"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.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.

가.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

나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

다. 「주택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

2.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

3.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

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

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5조의2(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)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(「경비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)는 「경비업법」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입주자등,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,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입주자등,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
2.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

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